

<별지1호 서식: 붙임2> 개정 규정 전문

## 2-1-3 대학원 학칙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칙은 예수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,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학원의 종류)** 본교에 일반대학원인 대학원을 둔다.

**제3조(대학원의 과정)** 대학원에 <별표 1>과 같이 석사학위과정을 둔다.

**제4조(학과.전공 및 입학정원)**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.전공 및 입학정원은 <별표 1>과 같다. 다만,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### 제 2 장 입학.편입학.재입학.등록.휴학.복학 및 제적

**제5조(입학시기)** 대학원의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

**제6조(입학자격)**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3.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입학일 이전 취득 예정자<신설 2023.2.7.>

**제7조(입학지원절차)**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2.1.>

**제8조(입학전형)**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심사, 구술시험, 면접 등으로 시행한다.

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2.1.>

**제9조(입학허가)**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.

**제10조(입학전공분야)<삭제 2023.2.7.>**

**제11조(편입학)**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학위과정 제3학기로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교외 각 대학원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재입학)** ①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제17조 제3호 내지 제5 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

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등록)** ①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규등록 : 수업년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

2. 입학등록·편입학등록·재입학등록 :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

3. 연구등록

가.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자격 또는 학위논문대체 인정 심의 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 중 논문 및 연구보고서 지도만 필요한 경우

나. 가 목 외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 학점등록을 포함한다.

4. 학점등록 :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(P/F교과 포함)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수료자 중 학위논문대체를 위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

[전문개정 2025.12.2.]

**제13조의2(정규등록)**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재학생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,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수료자 중 연구등록 또는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12.2.]

**제13조의3(연구등록 및 학점등록)** ①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학기에 연구등록하여야 하며, 연구등록금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/4로 한다.

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다음과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3학점 이하 : 수업료의 1/3

2. 6학점 이하 : 수업료의 2/3

3. 7학점 이상 : 수업료 전액

③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나 목에 해당하는 연구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연구등록금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추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해당 납입금은 수업료 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[본조신설 2025.12.2.]

**제14조(휴학)** ① 질병, 병역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 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 
<개정 2016.9.7.>>

②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23.2.7.>>

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임신·출산·육아 기간(통산 2학기 이내) 및 창업기간(통산 2학기)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까지,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7., 2023.2.7.>>

④ 휴학기간은 재학년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(이하 “논문제출년한”이라 한다)에 산입한다. 단, 병역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 등의 사유로 승인된 휴학은 그 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9.7.>>

**제15조(복학)** 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.

**제16조(퇴학)**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.

**제17조(제적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.

1.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2.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3.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
4. 재학년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5.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
### 제 3 장 수업년한, 교과과정, 학점, 성적 및 수료

**제18조(수업년한.재학년한)**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9.7.22.>>

② 대학원 과정의 재학년한은 논문제출년한과 같다.

**제19조(교과과정 및 수업운영)** 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대학원의 학년, 학기, 수업일수 등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.

③ 교과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원격수업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25.12.2.]

**제20조(수료인정 및 이수학점)**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.

③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심의 신청자의 추가 이수학점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9.3.1., 2025.12.2.>

제21조(학기당 취득학점)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 단,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22.>

제22조(보충과목 이수)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 20조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제23조(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) ①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6학점까지 당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24조(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) ① 대학원의 학생이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24.2.1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

제25조(학업성적)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본교 학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6조(유효성적과 수료성적)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6분의 5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,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3.00 이상이어야 한다.

#### 제 4 장 학위수여

제27조(학위의 수여 및 종별)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학위를 수여한다.<개정 2025.12.2.>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석사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<개정 2019.3.1., 2025.12.2.>

③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한다.<신설 2024.2.1.>

제27조의2(학위논문대체인정)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학위논문 대체 인정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7.22., 2025.12.2.>

②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<개정 2019.7.22.>

[본조신설 2019.3.1.]

**제28조(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)**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 논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9.3.1., 2019.7.22., 2022.2.17., 2023.7.3., 2024.2.1., 2025.12.2.>

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. 단, 학위청구논문 대체 심사 신청의 경우 제20조제3항에 따른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
2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3. 학부에서 지정하는 논문작성 관련 교과를 수강한 자
4.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영어교과목을 이수(P/F)한 자 또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한 자

**제28조의2(국내외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자격 부여)<삭제 2025.12.2.>**

**제29조(논문제출년한 등)**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)**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. 단, 제28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한 후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3.7.3., 2025.12.2.>

② 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 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제1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3.10., 2023.7.3., 2025.12.2.>

③ 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시 신청한 학위청구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.<개정 2025.12.2.>

**제30조의2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)** <삭제 2023.7.3.>

**제31조(논문제출 자격시험)** 제28조 제2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2.1.>

**제32조(학위청구논문 심사)**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<개정 2025.12.2.>

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2.1.>

**제33조(학위수여의 취소)**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학위를 수여받

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33조의2(학위청구신청 방법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 또는 학위청구논문대체 예정자는 3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신청방법 예정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위청구의 신청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방법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5.12.2.>

③ 학위청구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자 중 연구등록 및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

제13조의3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5.12.2.>

[본조신설 2019.7.22.]

## 제 5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

제34조(학생지도)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, 학과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(징계) ① 대학원의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정으로 총장이 징계한다.

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, 근신(근로봉사)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
제36조(장학금)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

제37조(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) ① 본교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8.2.13>

②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2.13>

제38조(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4.4.8., 2025.12.2.>

1. 입학, 수료 및 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심의,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- 학위과정, 학과, 전공의 설치·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
-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-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장학 사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38조의2(주임교수) ① 대학원 학과의 학사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두며, 자격,

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4.8., 2024.2.1.>

## 제 7 장 보 칙

**제39조(준용규정)** 학기, 수업일수, 휴업일,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,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.<개정 2024.2.1.>

**제40조(학칙개정 절차)** ① 대학원 학칙 개정은 대학의 학칙개정 절차에 따른다. <개정 2024.2.1.>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7조제2항, 제27조의2, 제28조는 고등교육법 개정(2017.5)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3조의2는 고등교육법 개정(2017.5)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) 학칙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) 학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) 학칙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) 학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) 학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)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) 학칙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, 제27조, 제27조의2는 고등교육법 개정(2017.5)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, 학과,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<개정 2021.11.16>

(제3조, 제4조 및 제27조 관련)

계열	석사학위과정		
	학과	학위	입학정원
자연과학계열	간호학과	간호학석사	10
총계	1학과		10

[별표2]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대학원 개설 영어교과목

<개정 2022.2.17.><삭제 2024.2.1.>

[별표3]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공인영어점수 기준

<개정 2022.2.17.><삭제 2024.2.1.>

[별지 제1호 서식] <신설 2024.2.1.>

## 학위기

성명

년 월 일 생

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○○학과 석사학위  
과정을 이수하고 ○○학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예수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○○학 석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예수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학위번호: 예수대 ○○○○ 석 ○○○○ (○○)석 제 호